

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. 1.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관련법령

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3. 주요골자

“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” 문구 및 내용 삭제(안 제9조제1항, 제2항, 제11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15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- 2005. 1.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 됨에 따라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 하므로써 그동안 악취와 미관저해, 무단투기행위 감시활동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해소하여 대민편익을 제고하고

-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입법취지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문구를 삭제·정비 하므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환경부 제2차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부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세부계획 등에 관련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점에 비추어

위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.